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0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1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6호(2020.0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8호(202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6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호(2023.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89호(2023.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36호(2023.10.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8호(2023.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2호(2024.08.01.)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합니다.
2.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04,273.5	증 5.0	704,278.5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변경사유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증 5.0㎡)에 따른 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04,273.5	증) 5.0	704,278.5	-	-
촉진 구역	소계 (8개 구역)		461,574.9	증) 5.0	461,579.9	-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2,187.0	-	132,187.0	주택재개발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6,208.0	증) 5.0	16,213.0	주택재개발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3,068.0	-	73,068.0	주택재개발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40,493.5	-	40,493.5	주택재개발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7,809.0	-	37,809.0	주택재개발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2,822.0	-	72,822.0	주택재개발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3,154.5	-	33,154.5	주택재개발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23-61번지 일대	55,832.9	-	55,832.9	주택재개발	-
존치 구역	소계 (5개 구역)		112,861.0	-	112,861.0	-	-
	노량진9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1번지 일대	18,564.0	-	18,564.0	-	-
	노량진10존치관리구역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305.0	-	57,305.0	-	-
	노량진11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415.0	-	21,415.0	-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577.0	-	15,577.0	-	-
	노량진13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	-	-	-	-
존치 시설	소계 (11개 시설)		104,973.0	-	104,973.0	-	-
	6(동작전화국)	-	6,571.0	-	6,571.0	-	-
	7(근린생활시설)	-	5,831.0	-	5,831.0	-	-
	8(영화초/영등포중,고)	-	46,316.0	-	46,316.0	-	-
	9(장성빌딩)	-	4,484.0	-	4,484.0	-	-
	10(장승배기길)	-	18,366.0	-	18,366.0	-	-
	11(동작도서관)	-	1,934.0	-	1,934.0	-	-
	12(노량진천주교회)	-	2,559.0	-	2,559.0	-	-
	13(송학대교회)	-	5,232.0	-	5,232.0	-	-
	14(송학공원/동아유치원)	-	11,598.0	-	11,598.0	-	-
	15(원명빌딩/현황도로)	-	711.0	-	711.0	-	-
	16(영진교회/현황도로)	-	1,371.0	-	1,371.0	-	-
기 시행 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17,539.6	-	17,539.6	(주택재개발)	-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구역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7,325.0	-	7,325.0	(시장정비사업)	-

※ 변경사유 : 노량진2·6구역 경계 변경(노량진동 산30-50 지적선으로 조정, 면적 변경 없음) 및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정정(증 5.0㎡)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 16,208.0㎡ → 16,213.0㎡(증 5.0㎡)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 72,822.0㎡(면적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3-1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208.0	증) 5.0	16,213.0	100.0	-
정비기반 시설등	소계	4,100.0	증) 2.0	4,102.0	25.3	-
	도로	4,100.0	증) 2.0	4,102.0	25.3	-
택지 (획지)	소계	12,108.0	증) 3.0	12,111.0	74.7	-
	2-1	12,108.0	증) 3.0	12,111.0	74.7	-

※ 변경사유 :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증 5.0㎡)에 따른 면적 정정 등 반영

나. 용도지역에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16,208.0	증) 5.0	16,213.0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4,100.0	증) 2.0	4,102.0	25.3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4,100.0	증) 2.0	4,102.0	25.3
	준주거지역		12,108.0	증) 3.0	12,111.0	74.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	노량진 2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2.0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정정 및 구역 경계 변경(노량진동 산30-50임 제척)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증) 3.0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40	주간선도로	6,490 (163)	노량진 역전	구로동	일반도로	상도동길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도로	188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503호 2009.12.10	

※ ()는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량진2 재정비 촉진구역내	375.79	감) 9.08	366.71	지상2층
	경로당		195.54	증) 3.01	198.55	지하1층
	작은도서관		567.63	감) 302.34	265.29	지하1층
	주민휴게시설		125.39	감) 86.23	39.16	지하1층
	어린이놀이터		678.61	감) 64.53	614.08	옥외/지하1층
	주민운동시설		-	증) 25.00	25.00	지상2층
	복도/화장실		-	증) 211.83	211.83	지하1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16,208.0	2-1	12,108.0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72	-	-	72	-	-
변경		16,213.0		12,111.0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2 재정비 촉진구역	16,208.0	2-1	12,108.0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일대	주거복합 공동주택	50%이하 (계획 49.29%)	414%이하 (계획 413.99%)	155	-	45층
변경	노량진2 재정비 촉진구역	16,213.0	2-1	12,111.0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일대	주거복합 공동주택	54%이하 (계획 49.88%)	414%이하 (계획 408.56%)	155	-	4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분		계		임대(장기전세주택)(㎡)			분양(부분임대)(㎡)		
						소계	60이하	60~85	85이상	소계	60이하
		기정	주택(호)	411	107	78	29	-	304	87	175
		변경	주택(호)	404	105	82	23	-	299	79	17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장승배기길 변 : 건축한계선 9.3 ~ 10m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기타 건축선 등에 대한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계획 (공공공지)		- 대지면적의 7% 이상 설치할 것 -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통로 계획 (공공보행통로)		- 폭원 4m 이상으로 설치하되 24시간 개방할 것 -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

3)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B)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6,213.0㎡	12,111.0㎡	4,102.0㎡	196.08㎡	1,031.0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C)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102.0㎡ - 196.08㎡ - 1,031.00㎡ = 2,872.92㎡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190%				
기부채납 용적률	기부채납 용적률 - 상한용적률(완화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토지) / 기반시설 제공 후 면적] = 190 × [1 + (1.3 × 1.04 × 2,872.92) / 12,111.0] = 250.93% 이하(250.0% 적용) ※ 가중치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8% / 190% = 1.04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2,379 × 190% + 1,723 × 210%) / 4,102 = 198.4%				
상한 용적률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대지면적	적용산식 (6,901×500%)+(5,210×300%) / 12,111 = 413.96% ≒ 414.0% 건축계획(안) 408.56%
	1차 역세권	준주거	500%	6,901㎡	
	2차 역세권	준주거	300%	5,210㎡	
	합계			12,111㎡	

※ 정확한 면적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확정함

바.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에 따라 증가되는 주거연면적의 ½이상을 장기전세주택(SHIFT)로 건립(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 장기전세주택(SHIFT) 규모별 건설비율(「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

장기전세 주택 (SHIFT)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408.56\% - 246.80 = 161.76\%$		
	증가된 용적률의 50%	$161.76\% \times 0.5 = 80.88\%$ $12,111\text{㎡} \times 80.88\% = 9,795.4\text{㎡}$		
	의무 연면적	9,795.4㎡ 이상		
장기전세주택(SHIFT)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59.99㎡	89.79㎡	82
		74.99㎡	111.07㎡	17
		84.74㎡	125.00㎡	6
		합 계		105
				연면적(㎡)
				7,362.78
				1,888.19
				750.00
				10,000.97

사. 기부채납 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관리청
도로	대로 3-18	• 대로 3-18(장승배기로) 호선 일부 확장 - 폭 5.5~15.0m, 연장 160m	서울시
	중로 3-37	• 중로 3-37호선 개설 - 폭 12m, 연장 188m	동작구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차.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파. 역세권 건축물 밀도 계획(변경)

1) 용적률 적용 체계

계획기준	계획내용	
	기 정	변 경
용적률 완화	413.99%	408.56%
임대주택 건립 (증가 용적률의 ½ 이상)	●증가용적률 : $413.99 - 249.98 = 164.01$ ●의무 연면적 : 9,929.2㎡ 이상 ($12,108\text{㎡} \times 164.01\% \times 50\%$) ●계획 연면적 : 9,991.63㎡	●증가용적률 : $408.56 - 246.80 = 161.76$ ●의무 연면적 : 9,795.4㎡ 이상 ($12,111\text{㎡} \times 161.76\% \times 50\%$) ●계획 연면적 : 10,000.97㎡
비주거 (연면적 10% 이상)	●비주거 : 10,344.30㎡ (12.05%) (연면적 : 85,868.25㎡)	●비주거 : 8,424.76㎡ (10.06%) (연면적 : 83,746.95㎡)

2)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기 정	변 경
필수 (2)	창조적 도시디자인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3% 이상)	도입시설 :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사우나시설, 웰컴라운지, 주민카페, 스카이라운지	
		•커뮤니티 : 1,541.19㎡(3.4%) - 1층 1,202.80㎡ 45층 338.39㎡ (지하주차장 등 1,119.12㎡제외)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45,436.66㎡	•커뮤니티 : 1,442.87㎡(3.02%) - 1층 1,168.42㎡(2층공용부 포함), 45층 274.45㎡ (지하주차장 등 1,806.81㎡제외)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47,817.85㎡
선택 (3)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75점 이상)의 친환경 인증 : 예비인증서 착공전 제출(이행계획서 제출)	
	에너지효율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또는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74점 이상 : 예비인증서 착공전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 : 예비인증서 착공전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하. 생택면적률(변경없음)

거. 건축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구역면적(㎡)	16,208	증) 5	16,213	
대지면적(㎡)	12,108	증) 3	12,111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0,125.81	감) 644.84	49,480.97	
건축면적(㎡)	5,968.26	증) 72.21	6,040.47	
용적률(%)	413.99	감) 5.43	408.56	
건폐율(%)	49.29	증) 0.59	49.88	
주차대수(대)	620	감) 56	564	

너.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4.90% ⇒ (3,146억 - 2,320억) / 787억 × 100 = 104.90% - 총수입 추정 : 3,146억 - 총지출 추정 : 2,320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787억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보정률(1.8)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보정률(1.75) - 건물 = 개략단가(약 100만원/3.3㎡) × 연면적 ※ 건물의 개략단가는 경과연수 21~35년 기준 평균 약 100만원/평 추정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head> <tbody> <tr> <td>전용59㎡A형</td><td>5.39억</td><td rowspan="11">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4.90%)</td><td rowspan="11">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 <td>전용74㎡A1형</td><td>6.32억</td></tr> <tr> <td>전용74㎡A2형</td><td>6.32억</td></tr> <tr> <td>전용84㎡A1형</td><td>6.80억</td></tr> <tr> <td>전용84㎡A2형</td><td>6.80억</td></tr> <tr> <td>전용84㎡B1형</td><td>6.79억</td></tr> <tr> <td>전용84㎡B2형</td><td>6.79억</td></tr> <tr> <td>전용84㎡C1형</td><td>6.79억</td></tr> <tr> <td>전용84㎡C2형</td><td>6.79억</td></tr> <tr> <td>전용109㎡A1형</td><td>8.21억</td></tr> <tr> <td>전용109㎡A2형</td><td>8.21억</td></tr> </tbody> </table>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59㎡A형	5.39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4.90%)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74㎡A1형	6.32억	전용74㎡A2형	6.32억	전용84㎡A1형	6.80억	전용84㎡A2형	6.80억	전용84㎡B1형	6.79억	전용84㎡B2형	6.79억	전용84㎡C1형	6.79억	전용84㎡C2형	6.79억	전용109㎡A1형	8.21억	전용109㎡A2형	8.21억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59㎡A형	5.39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4.90%)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74㎡A1형	6.32억																														
전용74㎡A2형	6.32억																														
전용84㎡A1형	6.80억																														
전용84㎡A2형	6.80억																														
전용84㎡B1형	6.79억																														
전용84㎡B2형	6.79억																														
전용84㎡C1형	6.79억																														
전용84㎡C2형	6.79억																														
전용109㎡A1형	8.21억																														
전용109㎡A2형	8.21억																														

※ 위 분담금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2021.03.11.)의 종전자산 추산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관리 처분계획(변경)인가 시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2,822.0	-	72,822.0	100.0	-
정비기반 시설등	소계	18,567.0	-	18,567.0	25.5	-
	도로	8,056.0	-	8,056.0	11.1	-
	공원	4,350.0	-	4,350.0	6.0	-
	문화시설	5,571.0	-	5,571.0	7.6	-
	공공시설	590.0	-	590.0	0.8	-
택지 (획지)	소계	54,255.0	-	54,255.0	74.5	-
	6-1	53,770.0	-	53,770.0	73.8	공동주택
	6-3	485.0	-	485.0	0.7	종교시설

※ 변경사유 : 노량진동 산30-50임 편입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반영)

나. 용도지역에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72,822.0	-	72,822.0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72,822.0	-	72,822.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656.0	-	4,656.0	6.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855.0	-	5,855.0	8.0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2,311.0	-	62,311.0	85.6
	준주거지역		-	-	-	-

※ 변경사유 : 노량진동 산30-50임 편입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반영)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도로	715 (33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9	15	특수도로	645 (20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도로	188 (0.1)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503호 2009.12.10	

※ ()는 구역 내

※ 변경사유 : 노량진동 산30-50임 편입에 따른 중로3-37 편입(도로개설은 노량진2구역에서 시행)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자. 생태면적률(변경없음)
 차. 건축계획(변경없음)
 카.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4-1.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 감	변 경	
변 경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6,208.0	감) 5.0	16,213.0	-

※ 변경사유 :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증 5.0㎡)에 따른 면적 정정 및 노량진동 산30-50임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16,208.0	증) 5.0	16,213.0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4,100.0	증) 2.0	4,102.0	25.3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4,100.0	증) 2.0	4,102.0	25.3
	준주거지역		12,108.0	증) 3.0	12,111.0	74.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	노량진 2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2.0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정정 및 구역 경계 변경(노량진동 산30-50임 제척)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증) 3.0	

다. 기반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2-1	12,108	증) 3.0	12,111	복합시설

※ 변경사유 :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증 5.0㎡)에 따른 면적 조정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폐율	비 고
2-1	기 정	· 50.0% 이하	－
	변 경	· 54.0% 이하	－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2-1	기 정	190% 이하	-	413.99% 이하	414.00%	-
	변 경	190% 이하		408.56% 이하	414.00%	

－ 높이 계획(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SHIFT)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임대 (SHIFT)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SHIFT
합 계	404	100.0	105	－	105	26.0	100.0	100.0
40㎡이하	－	－	－	－	－	－	－	－
40~50㎡이하	－	－	－	－	－	－	－	－
50~60㎡이하	161	39.9	82	－	82	20.3	78.1	78.1
60~85㎡이하	202	50.0	23	－	23	5.7	21.9	21.9
85㎡초과	41	10.1	－	－	－	－	－	－

4-2.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 감	변 경	
변 경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2,822	-	72,822	-

※ 변경사유 : 노량진동 산30-50임 지적선으로 구역 경계 조정(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반영)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72,822.0	-	72,822.0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72,822.0	-	72,822.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656	-	4,656	6.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855	-	5,855	8.0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2,311.0	-	62,311.0	85.6
	준주거지역		-	-	-	-

※ 변경사유 : 노량진동 산30-50임 지적선으로 구역 경계 조정(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반영)

다. 기반시설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도로	715 (33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9	15	특수도로	645 (20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도로	188 (0.1)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503호 2009.12.10	

※ ()는 구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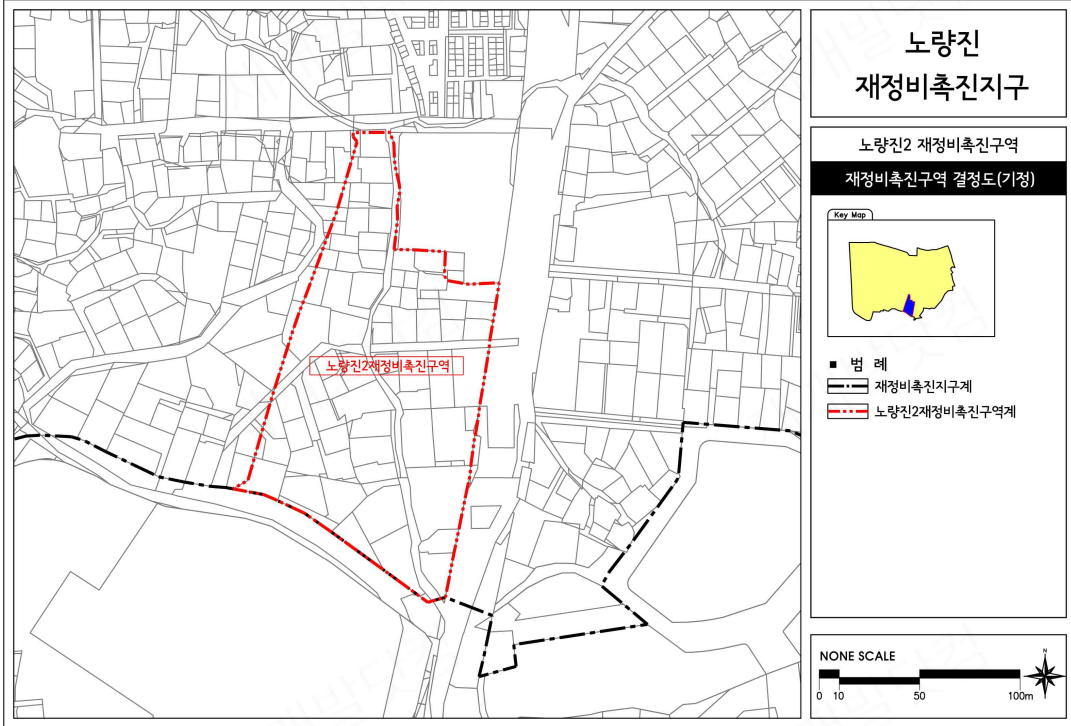
※ 변경사유 : 노량진동 산30-50임 지적선으로 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중로3-37 편입(도로개설은 노량진2구역에서 시행)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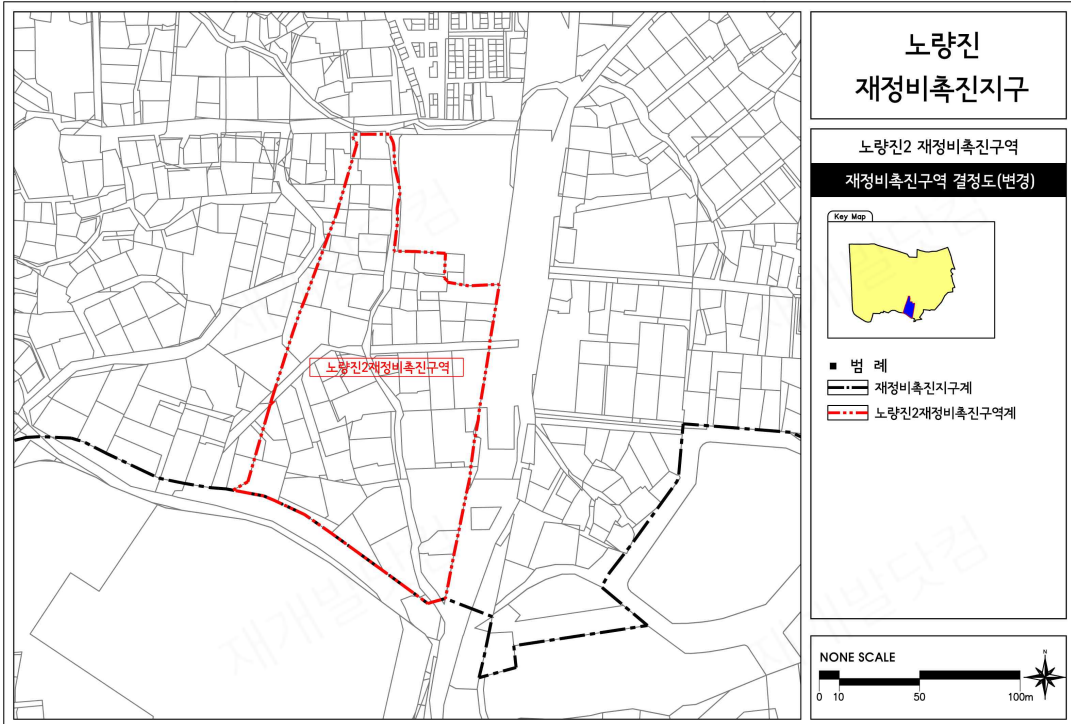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붙임(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및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과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과(☎02-2133- 7224)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02-820-9267)에 관련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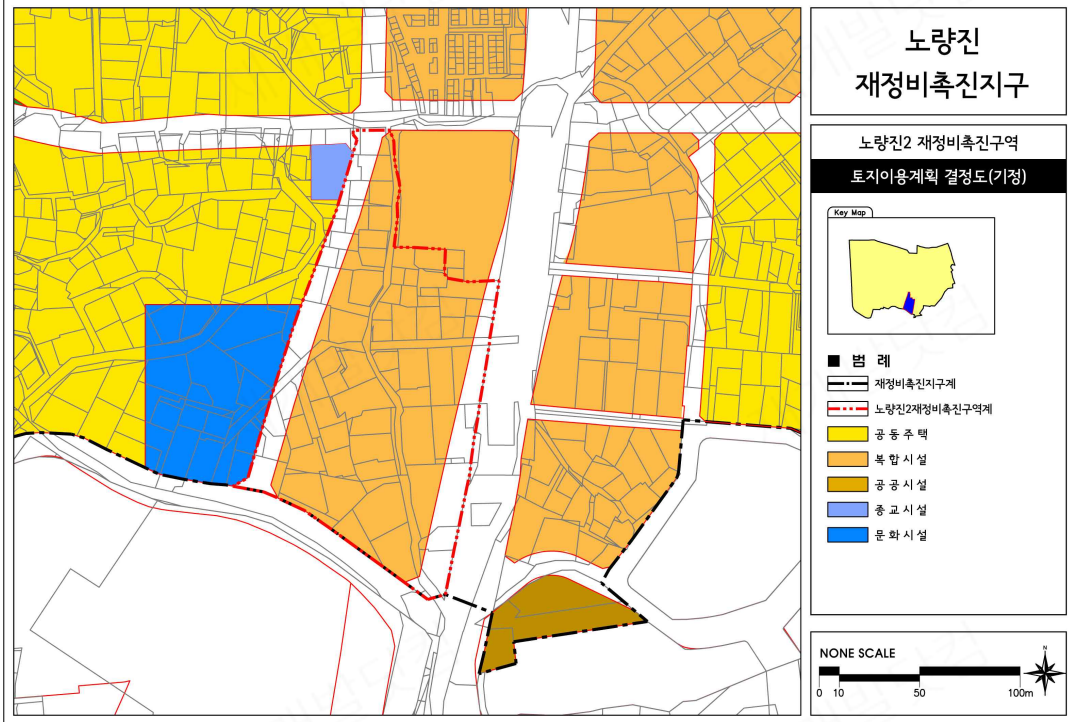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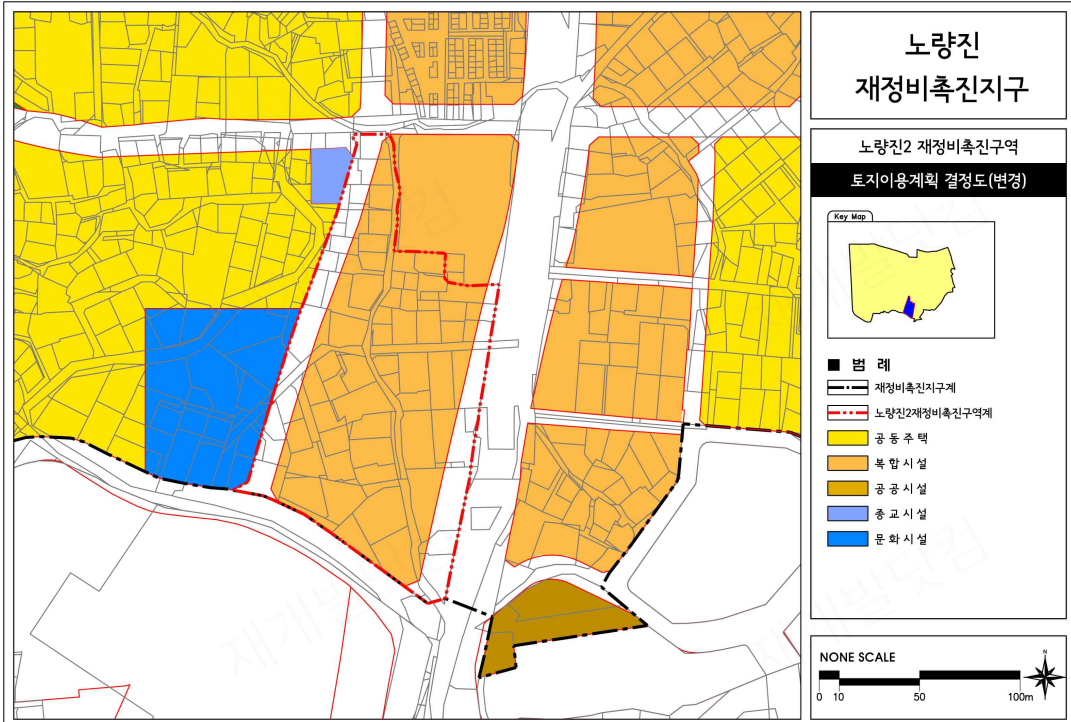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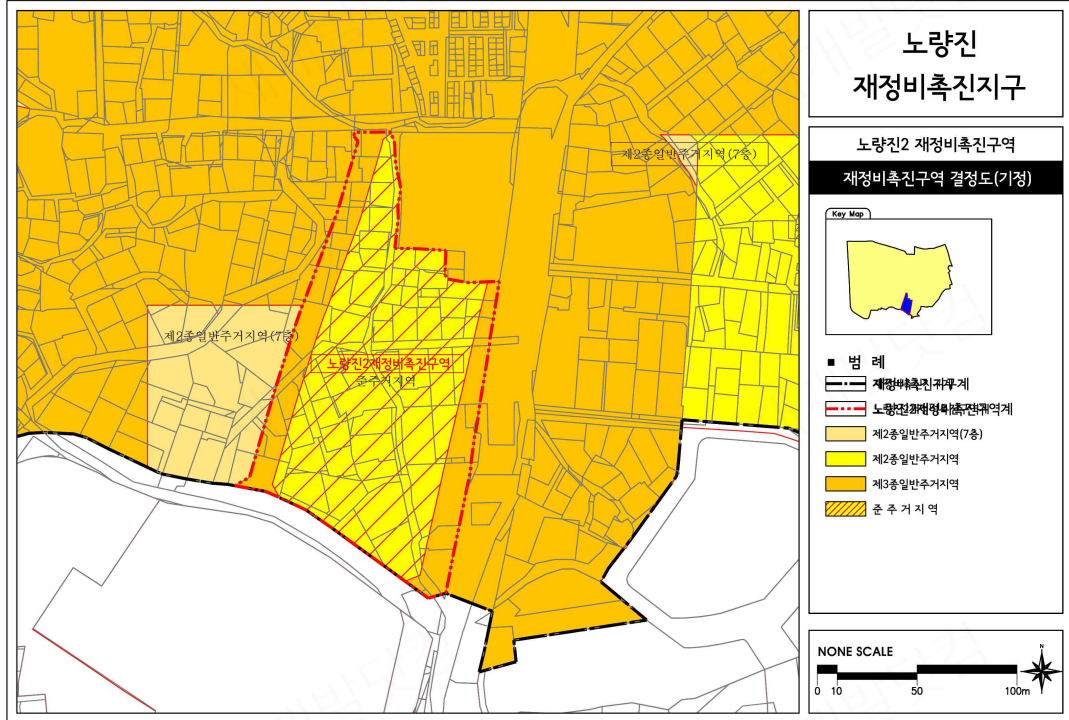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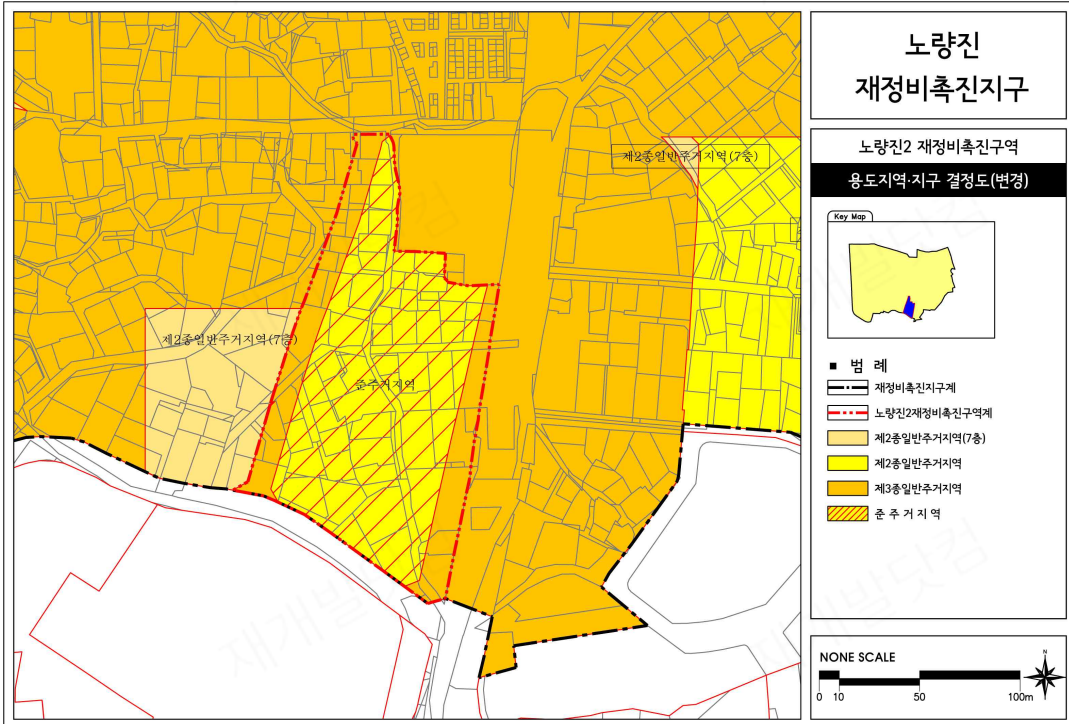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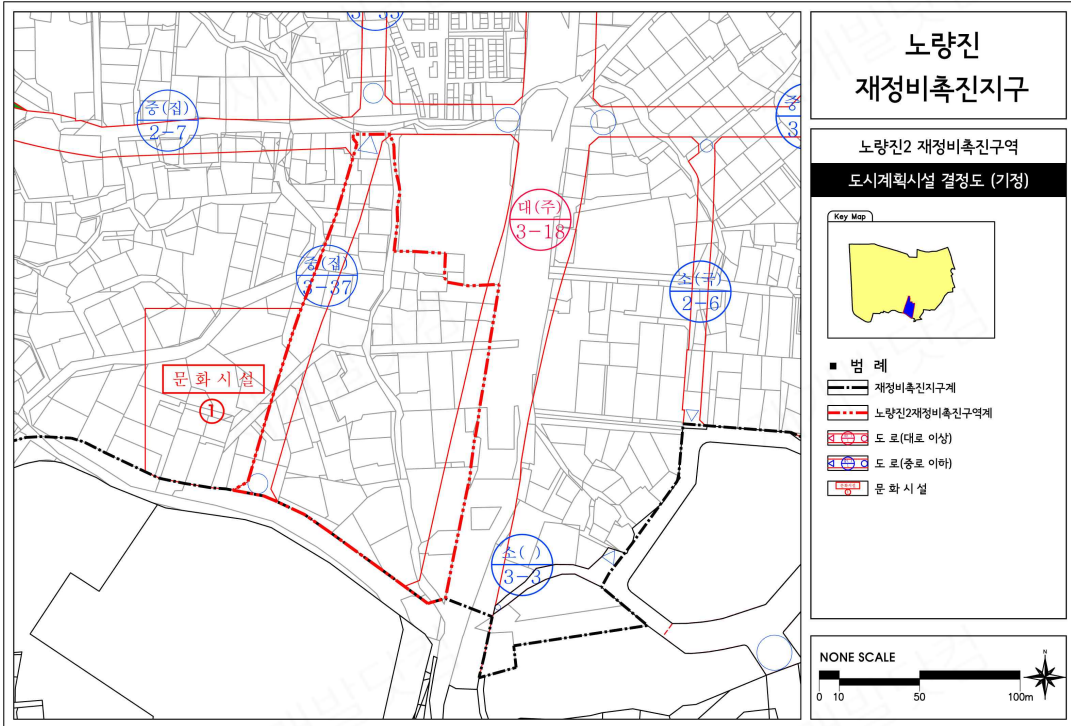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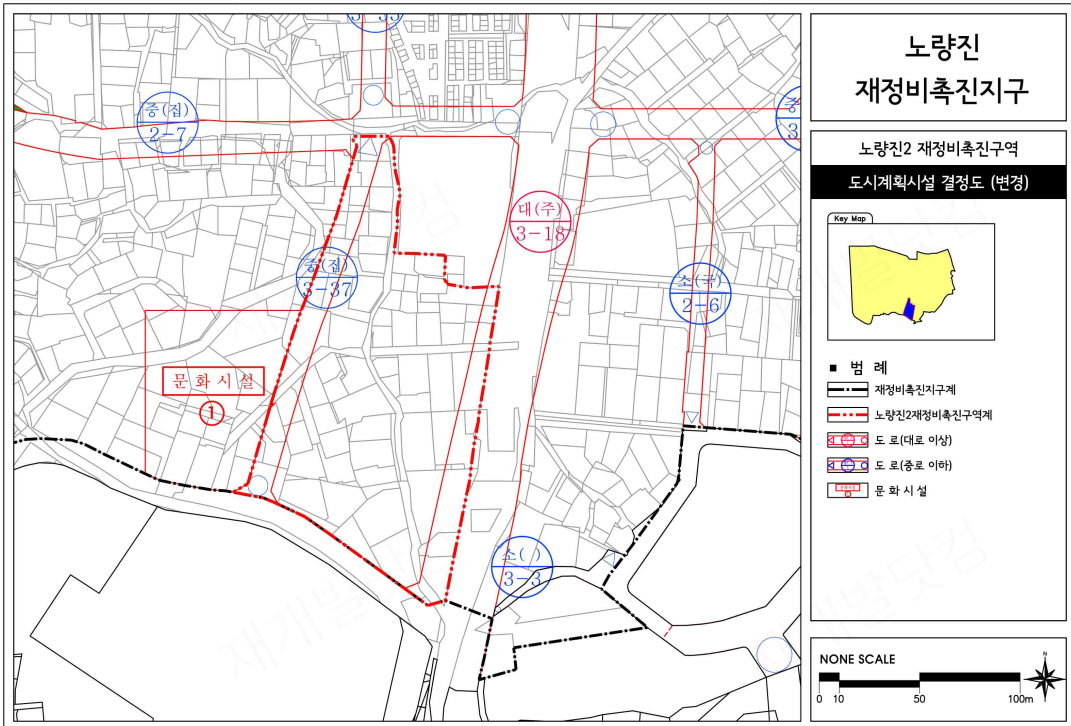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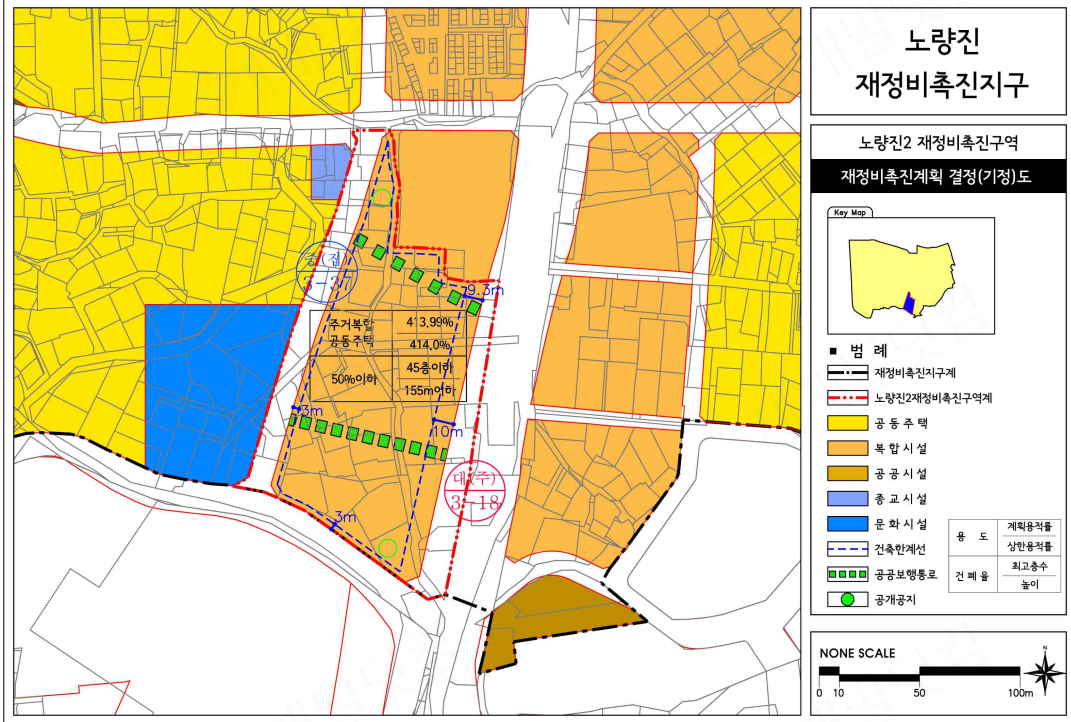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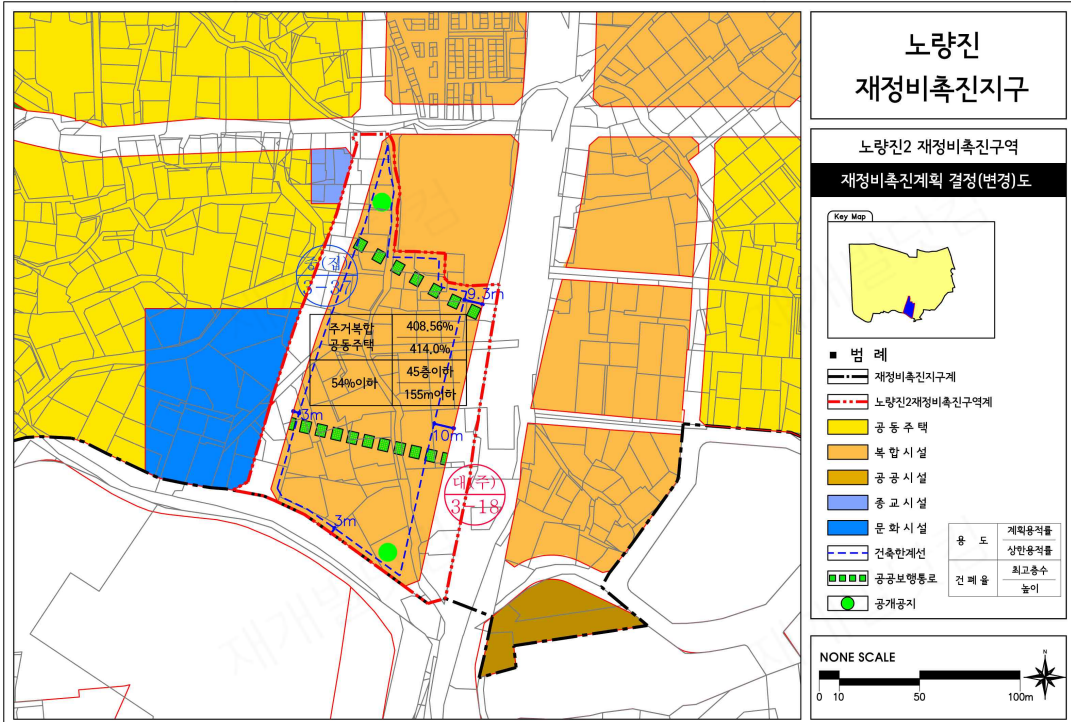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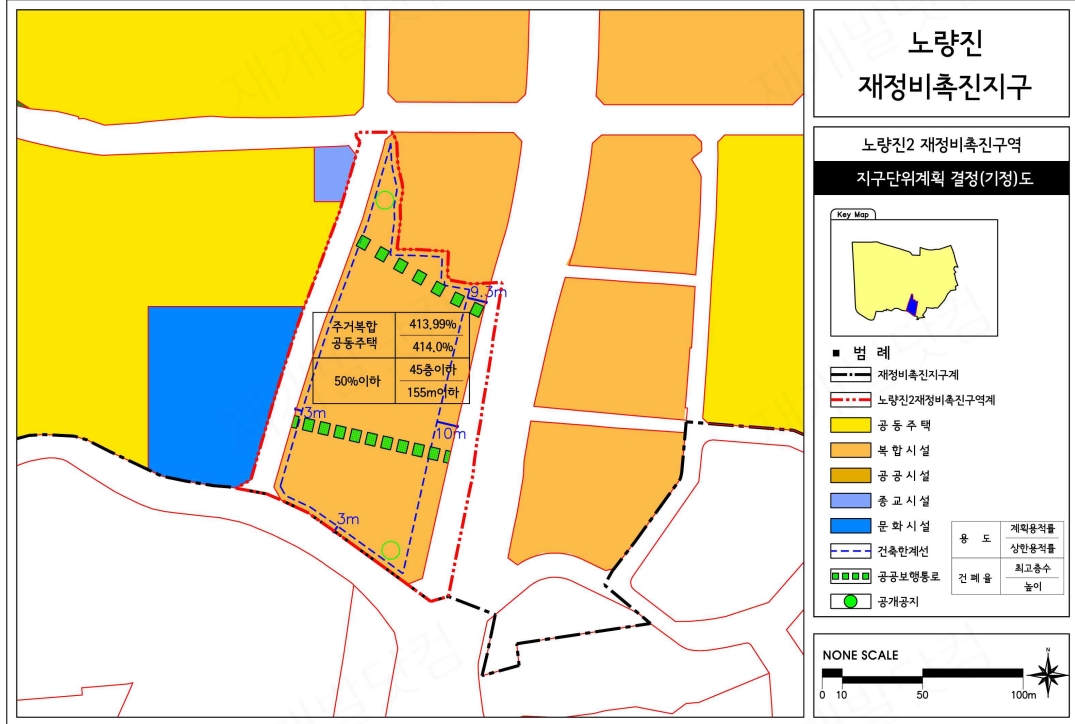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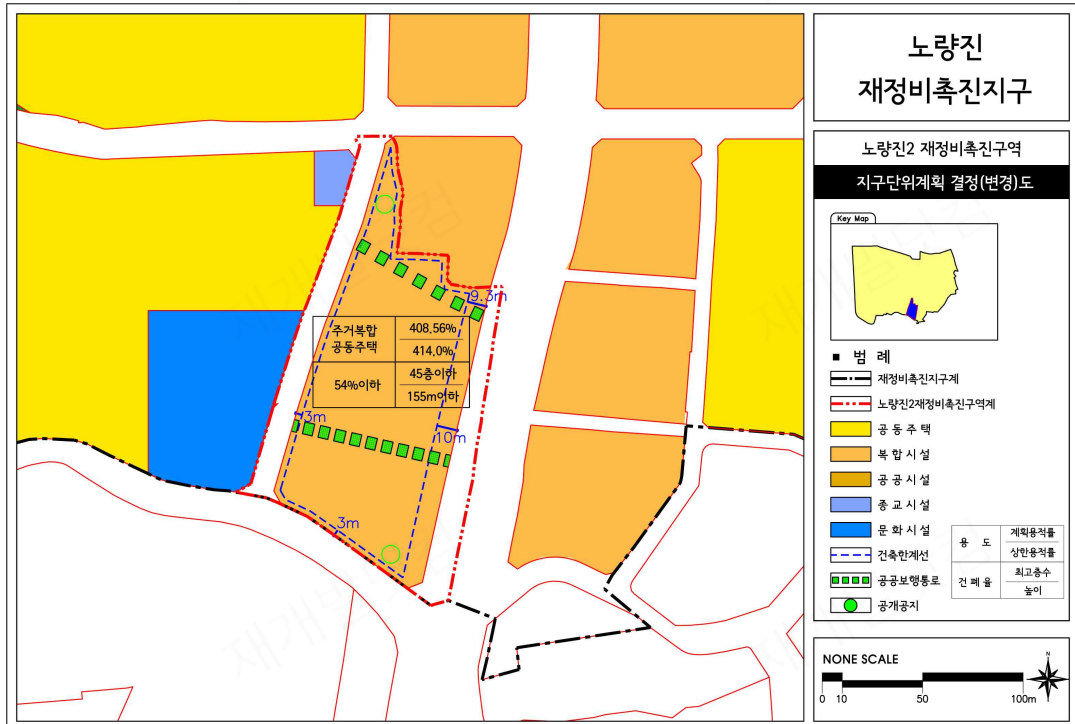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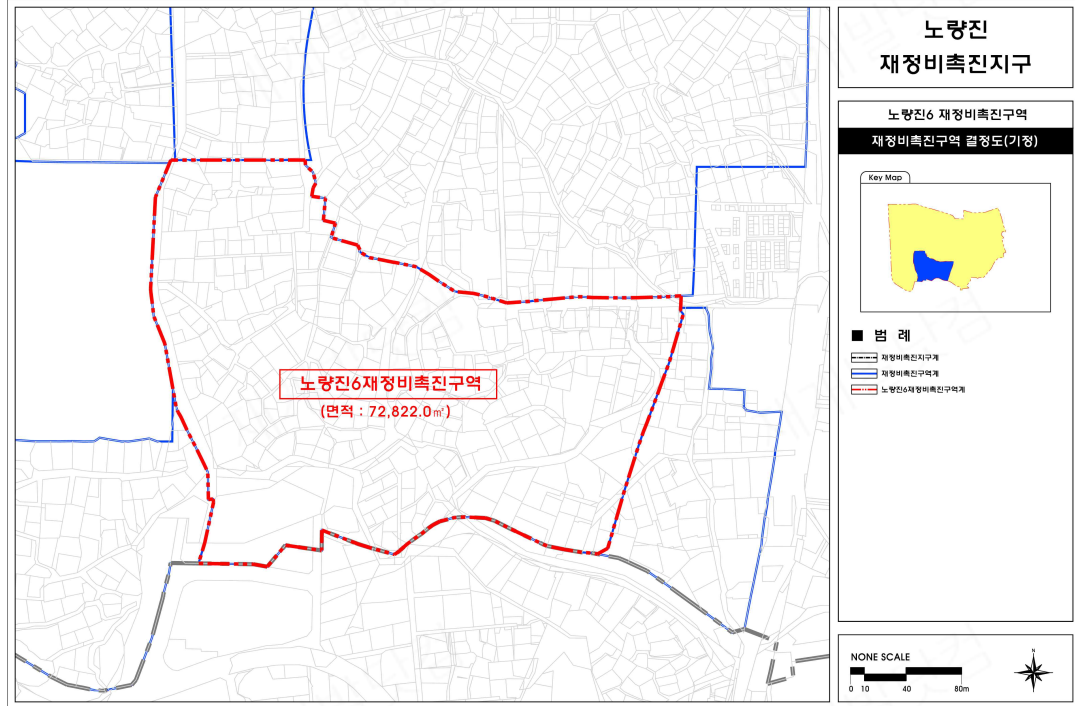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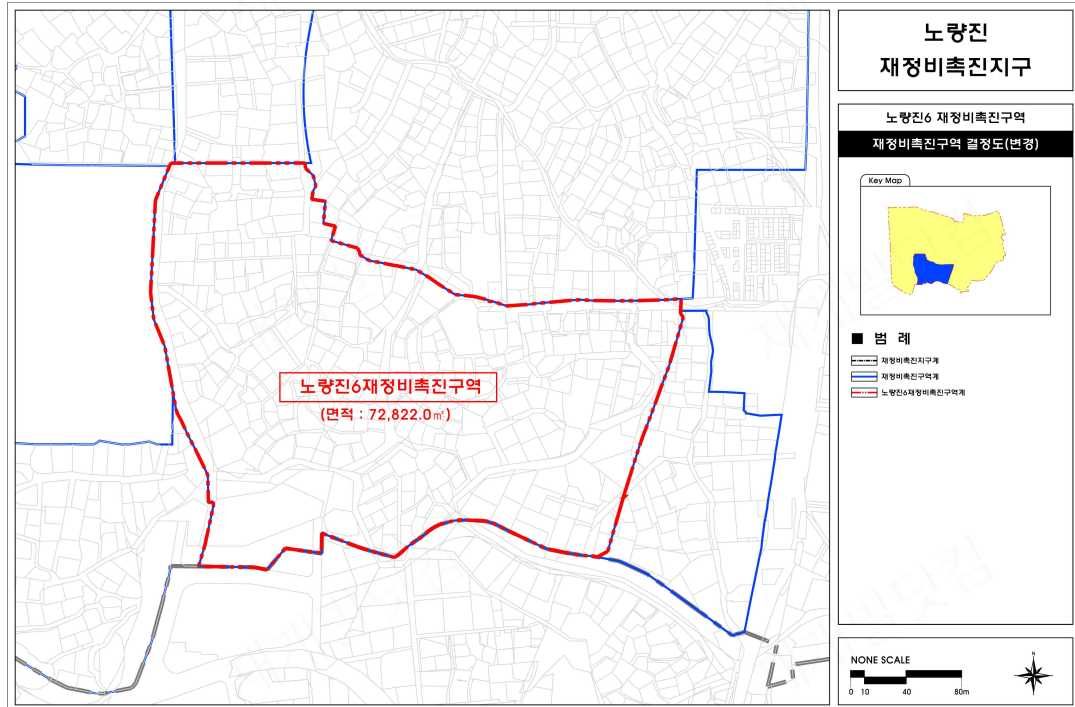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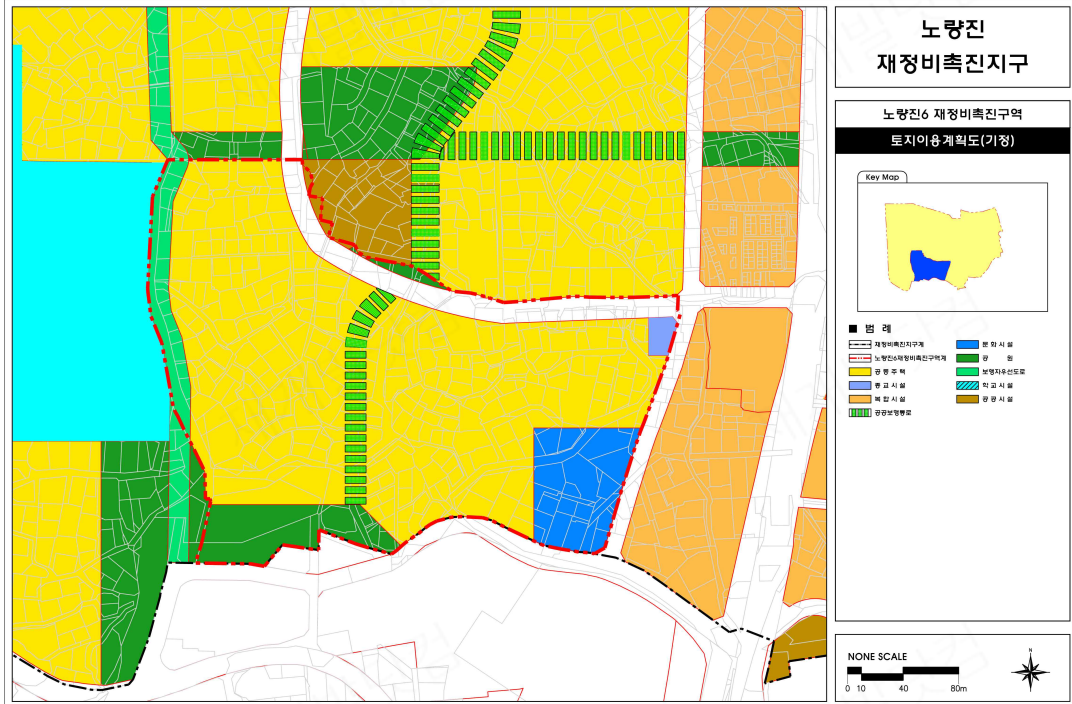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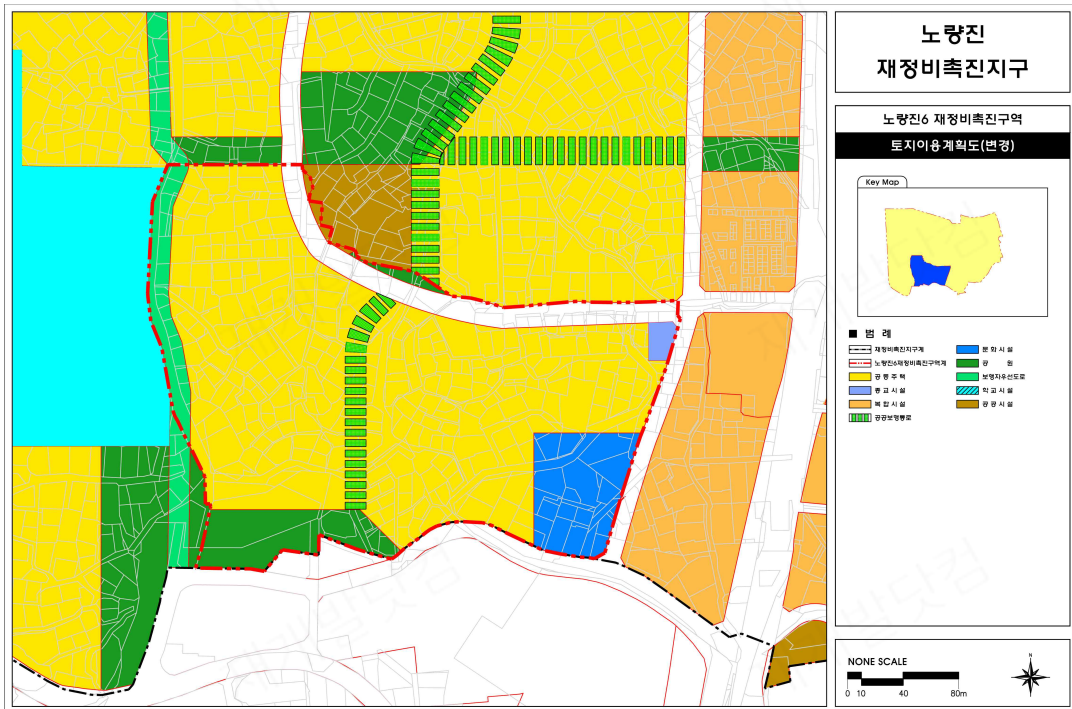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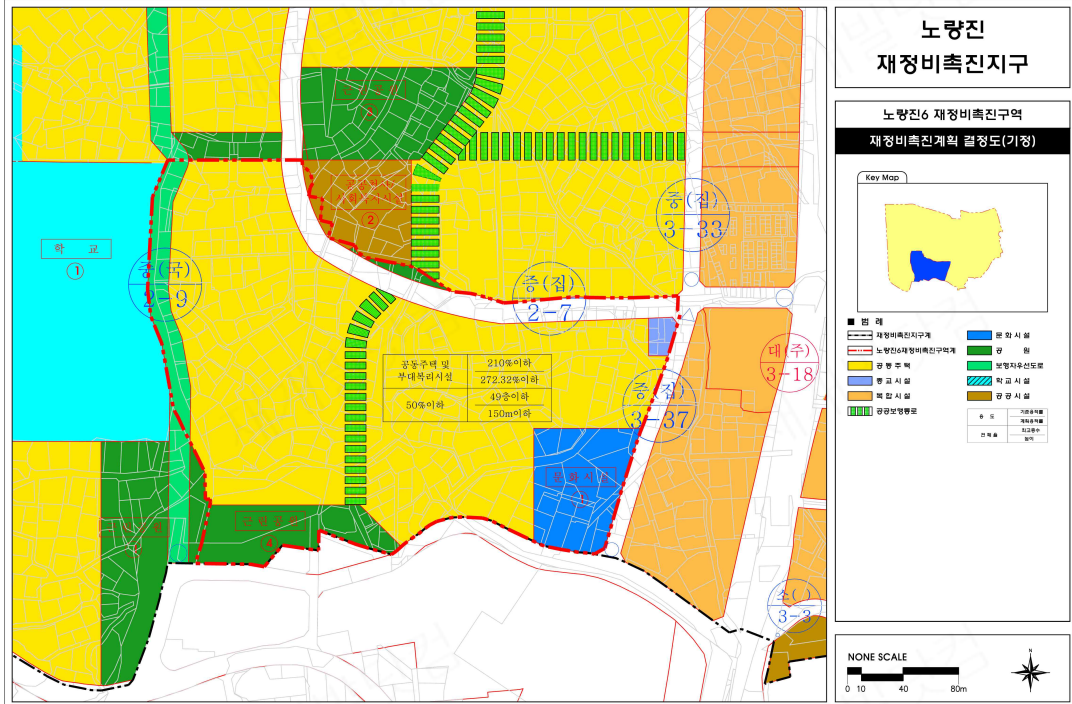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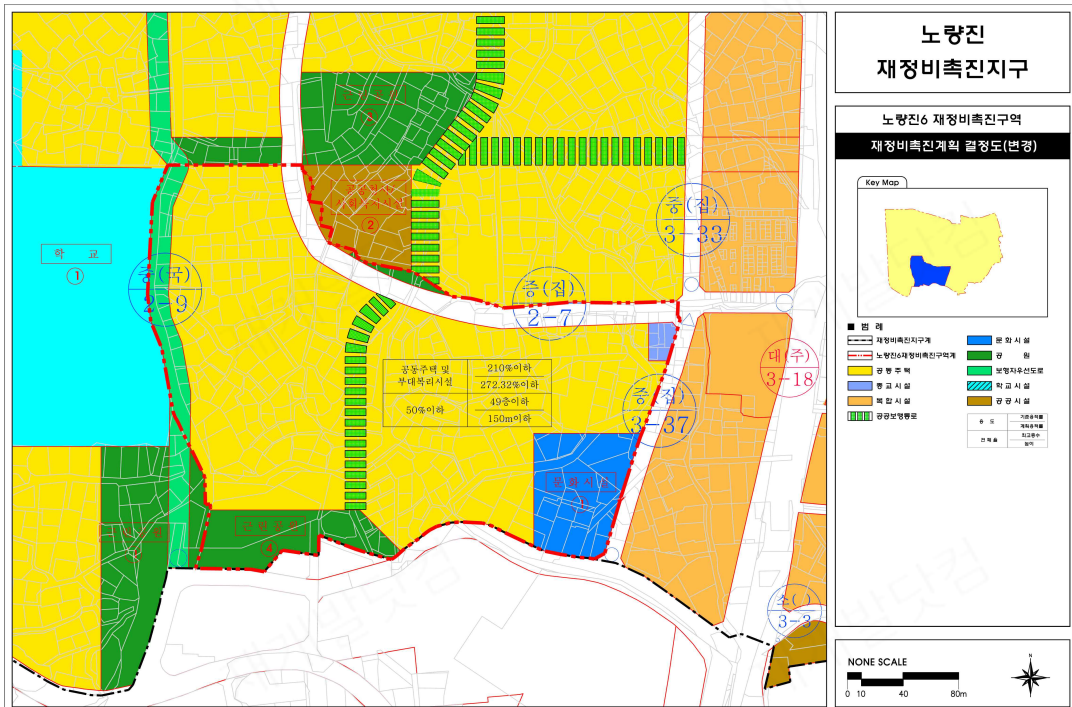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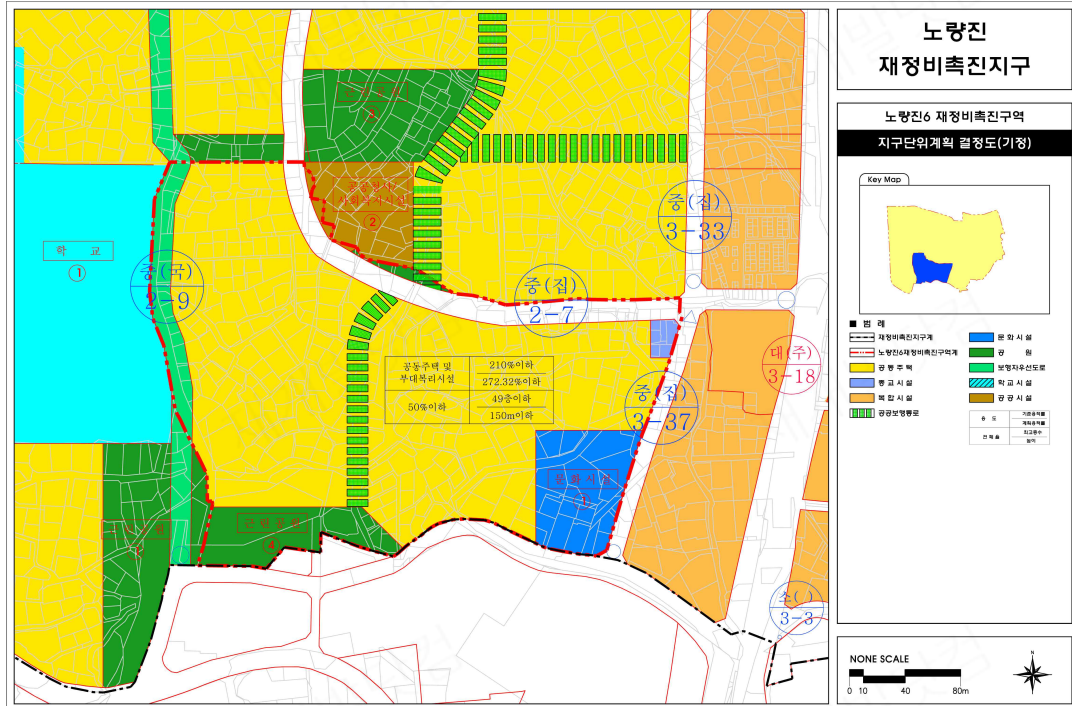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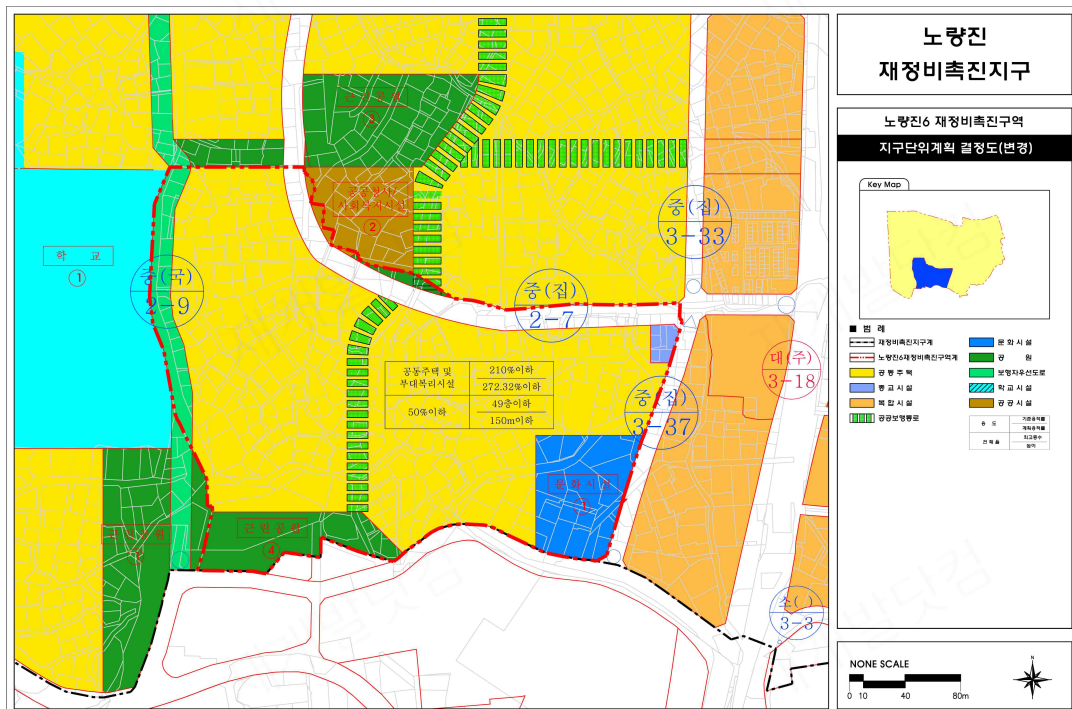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붙임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04,273.5	증) 5.0	704,278.5	

※ 변경사유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증 5.0㎡)에 따른 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704,273.5	증) 5.0	704,278.5	100.0	-
획지	소 계	480,601.8	증) 3.0	480,604.8	68.2	-
	공동주택	314,311.6	증) 3.0	314,314.6	44.6	노량진2구역
	복합시설	146,411.2	-	146,411.2	20.8	-
	근린생활시설	7,907.0	-	7,907.0	1.1	-
	종교시설	11,972.0	-	11,972.0	1.7	-
기반 시설	소 계	223,671.7	증) 2.0	223,673.7	31.8	-
	공원녹지	37,402.4	-	37,402.4	5.3	-
	공공시설	20,408.0	-	20,408.0	2.9	-
	공공공지	1,508.0	-	1,508.0	0.2	-
	문화시설	5,571.0	-	5,571.0	0.8	-
	학 교	59,409.0	-	59,409.0	8.5	-
	도 로	99,373.3	증) 2.0	99,375.3	14.1	노량진2구역

※ 변경사유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증 5.0㎡)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정정

나.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 (세대)		인구수 (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0,683	10,676	28,710	28,691	
기 시행구역		511	511	1,379	1,379	
존치구역		1,126	1,126	2,906	2,906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	9,046	9,039	24,425	24,405	
	40㎡이하	1,048	1,048	2,830	2,830	
	40~60㎡	3,516	3,512	9,493	9,482	
	60~85㎡	3,808	3,806	10,282	10,276	
	85㎡ 초과	674	673	1,820	1,817	

※ 변경사유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1	뉴타운	노량진 1동	232-19	7.3	19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		노량진 2동	278-2	13.2	210%	-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변경	3		노량진 2동	294-220	7.3 7.3	210%	-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변경	22		노량진 2동	312-75	1.6 1.6	190%	-	50% 54%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3		노량진 1동	227-5	4.0	210%	-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4		노량진 2동	270-3	3.8	210%	-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5		대방동	13-31	3.3	195%	-	6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6		대방동	23-61	5.5	210%	-	6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사유 : 노량진2·6구역 경계 변경(노량진동 산30-50임 노량진2구역에서 제척) 및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정정(증 5.0㎡)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 16,208.0㎡ → 16,213.0㎡ (증 5.0㎡)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 72,822.0㎡ (면적 변경없음)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704,273.5	증) 5.0	704,278.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688,737.5	증) 2.0	688,739.5	97.8
		제1종일반주거지역	38,817.4	-	38,817.4	5.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7,026.9	-	137,026.9	19.5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20.1	-	127,020.1	18.0
		제3종일반주거지역	385,873.1	증) 2.0	385,875.1	54.8
	준주거지역		12,108.0	증) 3.0	12,111.0	1.7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 변경사유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증 5.0㎡)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정정

- 1) 노량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 2) 노량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 3) 노량진3구역 ~ 5) 노량진5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 6) 노량진6구역(주택재개발사업)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 7) 노량진7구역 ~ 8) 노량진8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차.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카.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높이)층수	비 고
			기준	계획	상한	완화	계획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87.0	50이하	24.17	300이하	266.08	265.60	- / 33층(11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2재정비 촉진구역	기 정	16,208.0	50이하	49.29	414이하	414.00	413.99	- / 45층(155m)이하	역세권밀도 계획적용
	변 경	16,213.0	54이하	49.88			408.56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068.0	50이하	22.20	250이하	243.66	241.26	- / 30층(110m)이하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493.5	60이하	17.38	300이하	263.72	263.69	25층 / 35층(12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37,809.0	50이하	18.57	300이하	272.81	270.63	-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22.0	50이하	19.51	300이하	272.33	272.32	- / 49층(15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60이하	24.33	240이하	242.06	237.44	18층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5%완화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55,832.9	60이하	22.10	300이하	242.05	236.43	22층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 변경사유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등

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재정비 촉진구역 (㎡) ①	계획 기반시설 (㎡) ②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③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④	계획 기반시설 중 유상매입 시설면적(㎡) ⑤	순부담면적 (㎡) (B=②-③-④- ⑤)	순부담 비율 (%) (B/①)
계	기정	461,656.9	130,765.3	32,409.1	22,742.8	-	75,652.8	16.38
	변경	461,624.9	130,765.3	32,409.1	22,004.1	-	76,352.2	16.54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87.0	31,830.3	1,314.30	5,428.10	-	25,087.90	18.98
노량진2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6,208.0	4,100.0	196.08	1,028.00	-	2,875.92	17.74
	변경	16,213.0	4,102.0	198.08	1,031.00	-	2,872.92	17.72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068.0	28,867.0	14,336.00	5,078.00	-	9,453.00	12.94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493.5	9,955.7	1,560.30	1,899.80	-	6,495.60	16.04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37,809.0	8,392.1	474.50	1,150.00	-	6,767.60	17.90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22.0	22,286.0	6,818.00	3,080.00	-	12,388.00	17.01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10,676.5	5,442.50	1,061.00	-	4,173.00	12.59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55,832.9	12,531.0	1,934.90	3,599.80	-	6,996.30	12.53

※ 변경사유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노량진동 314번지) 결과 반영(증 5.0㎡)에 따른 면적 조정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면적은 건축물(체육시설 연면적 1,809㎡)환산 부지면적(984.0㎡) 포함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면적은 건축물(공공시설 연면적 1,135㎡)환산 부지면적(399㎡) 포함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면적은 건축물(공공시설 연면적 16,932.528㎡)환산 부지면적(4,281.60㎡), 임대주택 지분 면적(1,053.0㎡), 임대주택 환산 면적(460.7㎡) 포함

파.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분		합계	분양(부분임대)				임대					부분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9,046 (81)	7,423 (81)	2,996	3,753	674 (81)	1,623 [26]	623	595	350	55 [39]	81
	변경	9,046 (81)	7,423 (81)	2,996	3,753	674 (81)	1,623 [26]	623	595	350	55 [39]	81
노량진1촉진구역		2,992 (32)	2,461 (32)	1,322	1,041	98 (32)	531 [26]	214	180	111	26 [26]	32
노량진2 촉진구역	기정	411	304	87	175	42	107	-	-	78	29	-
	변경	404	299	79	179	41	105	-	-	82	23	-
노량진3촉진구역		1,012	838	198	443	197	174	80	74	20	-	-
노량진4촉진구역		842	693	287	248	158	149	61	65	23	-	-
노량진5촉진구역		727 (26)	597 (26)	253	304	40 (26)	130	52	60	18	-	26
노량진6촉진구역		1,499 (23)	1,237 (23)	412	753	72 (23)	262	106	106	50	-	23
노량진7촉진구역		576	478	174	301	3	98	40	40	18	-	-
노량진8촉진구역		987	815	263	488	64	172	70	70	32	-	-

※ 변경사유 : 노량진2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 ()는 부분임대 세대수, []는 노량진1촉진구역 기부채납 임대주택수

- 하.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거.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너. 폐기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더. 방재계획(변경없음)
 러. 정보화계획(변경없음)
 머.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버. 특성화계획(변경없음)
 서. 기타계획(변경없음)
 어.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노량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노량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3) 노량진3구역 ~ 5) 노량진5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6) 노량진6구역(주택재개발사업)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7) 노량진7구역 ~ 8) 노량진8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704,273.5	증) 5.0	704,278.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688,737.5	증) 2.0	688,739.5	97.8
		제1종일반주거지역	38,817.4	-	38,817.4	5.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7,026.9	-	137,026.9	19.5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20.1	-	127,020.1	18.0
		제3종일반주거지역	385,873.1	증) 2.0	385,875.1	54.8
	준주거지역		12,108.0	증) 3.0	12,111.0	1.7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	노량진 2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2.0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노량진 2구역	-	준주거지역	증) 3.0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3)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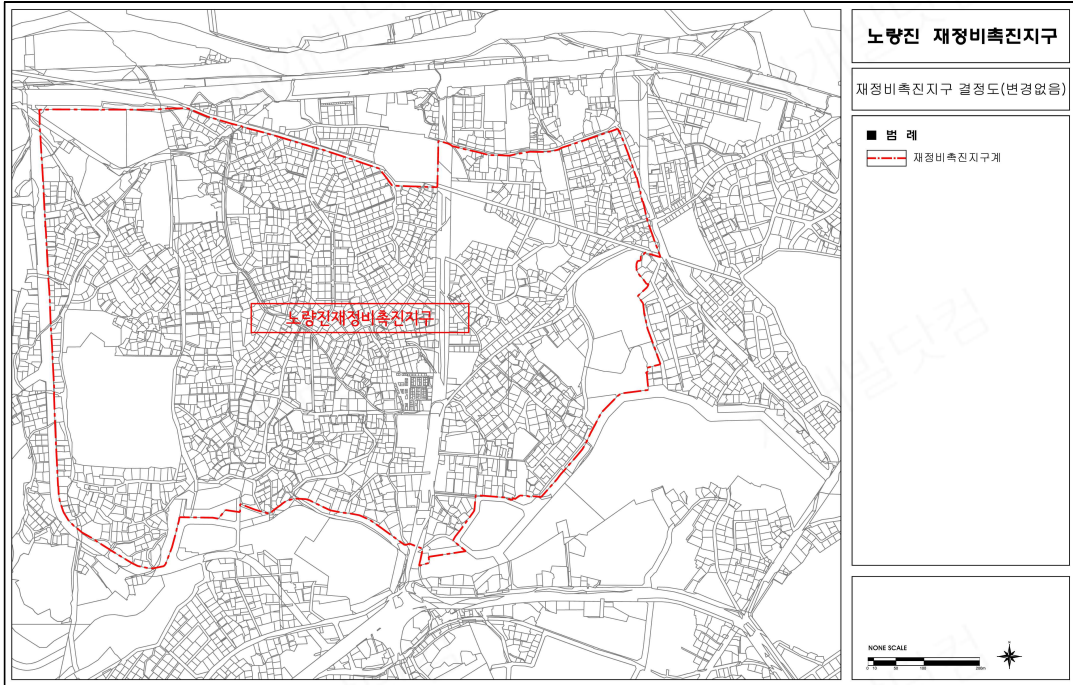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기 정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노량진동 278-2번지일대	132,187	-	132,187	-
변 경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노량진동 312-75번지일대	16,208	증) 5.0	16,213	-
기 정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노량진동 232-19번지일대	73,068	-	73,068	-
기 정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노량진동 227-5번지일대	40,493.5	-	40,493.5	-
기 정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7,809	-	37,809	-
기 정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노량진동 294-220번지일대	72,822	-	72,822	-
기 정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대방동 13-31번지일대	33,154.5	-	33,154.5	-
기 정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대방동 23-61번지일대	55,832.9	-	55,83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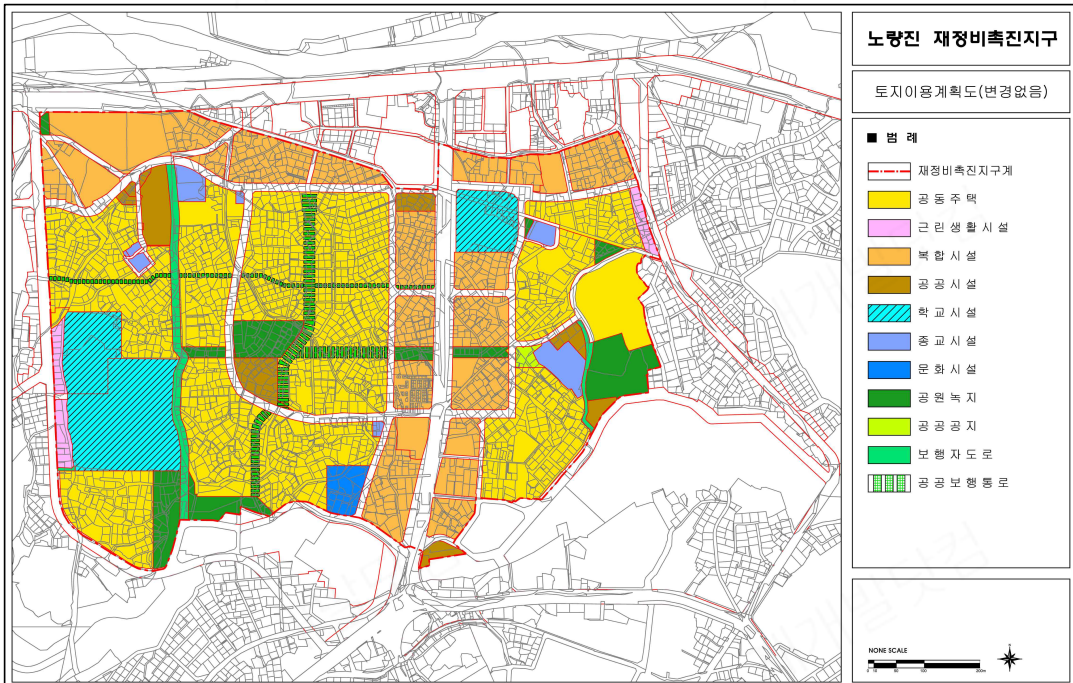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구 역	•구역경계 변경(증 5.0㎡) - 16,208.0㎡ → 16,213.0㎡	• 노량진동 산30-50 제외 및 지적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구 역	•구역경계 변경 - 72,822㎡(면적 변경없음)	• 노량진동 산30-50 지적선으로 구역 경계 조정(잔여 부 분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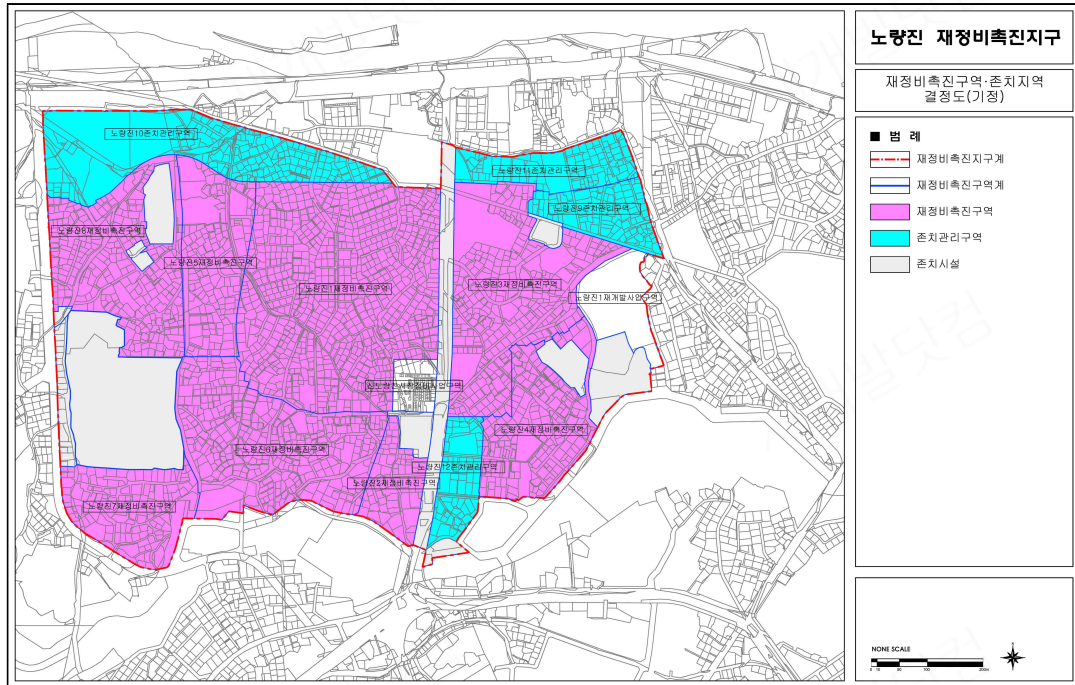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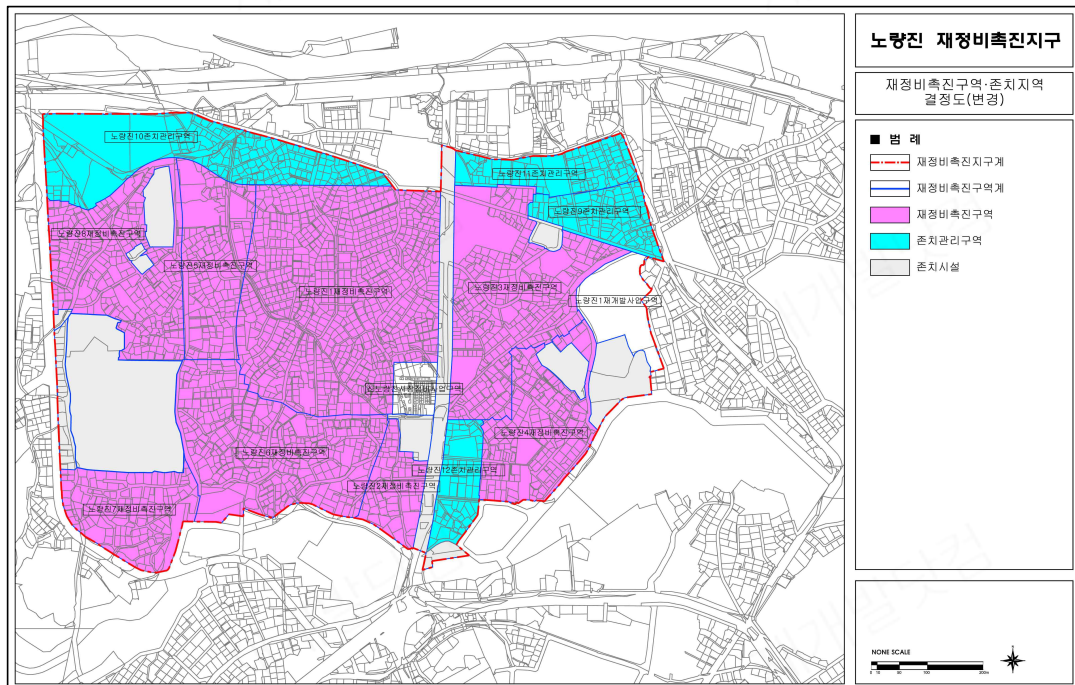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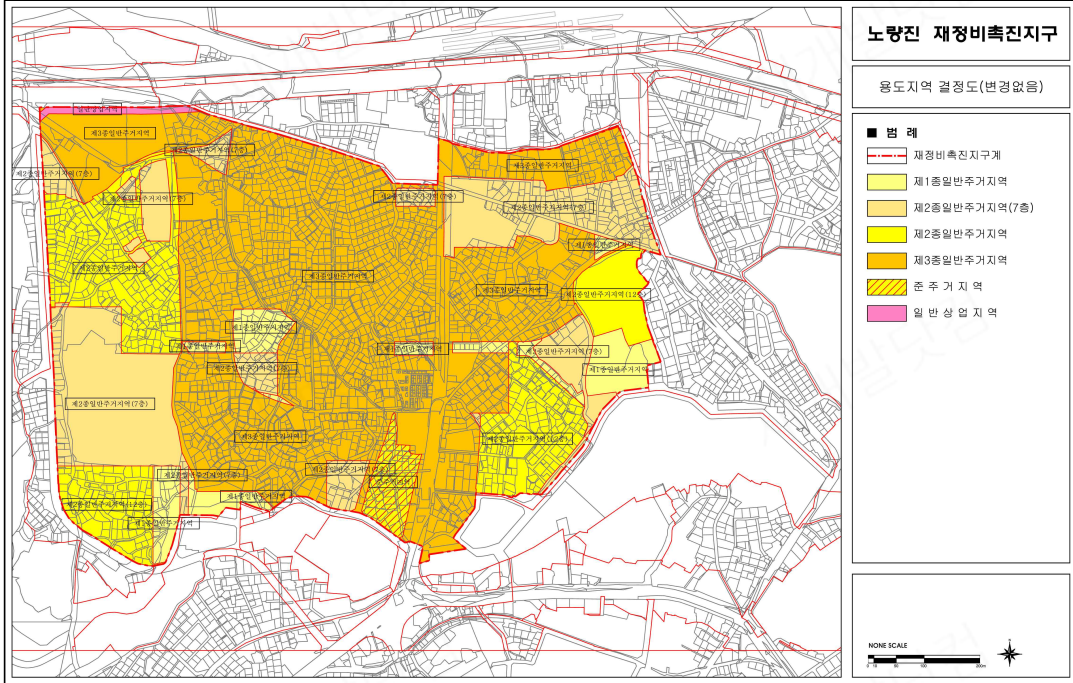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존치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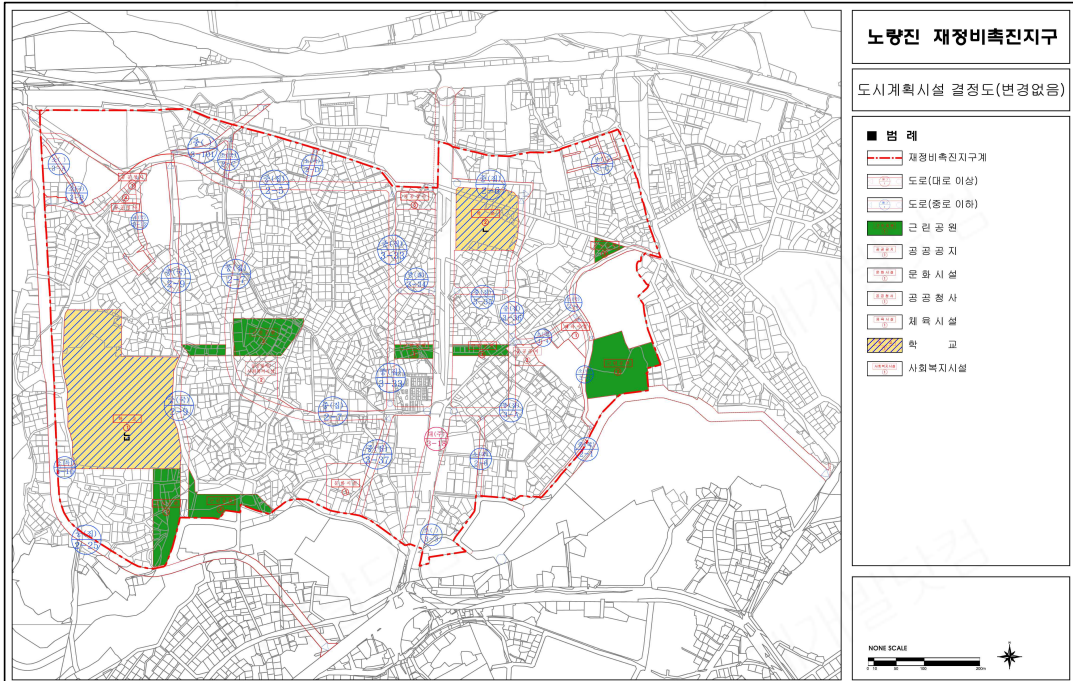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존치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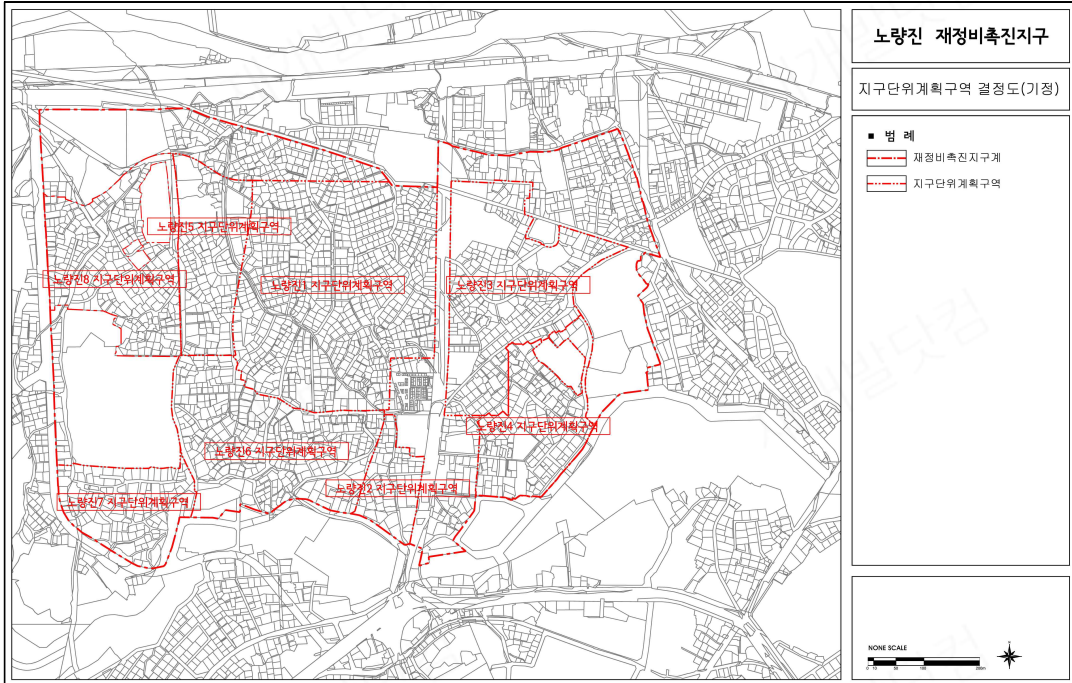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